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| | |
|---|-------|
| 선 | 기관위원장 |
| 람 | |

제1377호 2018. 2. 19(월)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8호 인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—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----- 5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30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----- 7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8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
규칙 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----- 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98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----- 23

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8-28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7-43호(2017. 4. 24.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도시계획시설【주차장, 사업명 : 주차장 설치공사】 사업을 시행하고자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인가를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8. 2. 19.

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217-31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종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
 - 명칭 : 주차장 설치공사
3. 사업의 규모(변경없음)

| 구분 | 도면 표시 번호 | 시설명 | 위치 | 면적(m ²) | 최초 결정일 | 비 고 |
|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- | 1 | 주차장 | 서구 가좌동 217-31번지 일원 | 1,736.7 | 서구청 고시 제2017-43호 | |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성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-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, 서구청)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있음)

◦ 당초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7. 12. 31.

◦ 변경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8. 12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있음)

: 불임과 같음
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<용 지 조 서>

| 연번 | 구분 | 지번 | 지목 | 지적면적(㎡) | 편입면적(㎡) | 소유자 | | 관계인 | | | 비고 |
|----|----|--------|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권리관계 | |
| 1 | 기정 | 217-31 | 장 | 784.9 | 784.9 | 성옥순 외 5인 |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 | | | | |
| | 변경 | 217-31 | 장 | 784.9 | 784.9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| | | | |
| 2 | 기정 | 217-32 | 장 | 255.2 | 255.2 | 성형제 외 1인 |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, 105동 303호 | 서인천농업협동조합 | 서구 신현동 283-3 | 근저당권 지상권 | |
| | 변경 | 217-32 | 장 | 255.2 | 255.2 | 성형제 외 1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1, 113동 101호 | 서인천농업협동조합 | 서구 신진말로 39 | 근저당권 지상권 | |
| 3 | 기정 | 217-33 | 대 | 248.1 | 248.1 | 김정옥 |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-1 | 가좌2,3,4동 새마을금고 | 서구 가좌동 217-11 | 근저당권 | |
| | 변경 | 217-33 | 대 | 248.1 | 248.1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| | | | |
| 4 | 기정 | 217-34 | 장 | 352.2 | 352.2 | 김병일 |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 | 주식회사 우리은행 | 서울 중구 소공로 51 | 근저당권 | |
| | 변경 | 217-34 | 장 | 352.2 | 352.2 | 김승후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 | 주식회사 우리은행 | 서울 중구 소공로 51 | 근저당권 | |
| 5 | 기정 | 217-35 | 도 | 94.3 | 94.3 | 성옥순 외 8인 |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 | 서인천농업협동조합 | 서구 신현동 283-3 | 근저당권 | |
| | 변경 | 217-35 | 도 | 94.3 | 94.3 | 성형제 외 3인 |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, 105동 303호 | 서인천농업협동조합 | 서구 신진말로 39 | 근저당권 | |
| 6 | 기정 | 217-36 | 장 | 2.0 | 2.0 | 이현호 | 서구 오류동 78-1 | | | | |
| | 변경 | 217-36 | 장 | 2.0 | 2.0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| | | | |

<지 장 물 조 서>

| 일련 번호 | 구분 | 지번 | 지목 | 물건의 종류 | 구조 | 토지소유자 | | 물건소유자 |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 성명 | 주소 | 성명 | 주소 | |
| 1 | 기정 | 217-31 | 장 | 주택 | 세와/콘크리트 블록, 토담벽 | 성옥순 외 5인 |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 | | | |
| | 변경 | 217-31 | 장 | 주택 외 | 세와/콘크리트 블록, 토담벽, 고물상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| | | |
| 2 | 기정 | 217-32 | 장 | 재배작물 | 고추, 파, 콩 등 | 성형제 외 1인 |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, 105동 303호 | | | |
| | 변경 | 217-32 | 장 | 재배작물 | 고추, 파, 콩 등 | 성형제 외 1인 |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91, 113동 101호 | | | |
| 3 | 기정 | 217-33 | 대 | 주택 | 연와조/스라브 | 김정옥 |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-1 | 김정옥 |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18번안길 13-1 | |
| | 변경 | 217-33 | 대 | 주택 | 연와조/스라브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 곡동) | |
| 4 | 기정 | 217-34 | 장 | 공장 | 일반철골구조 | 김병일 |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 | 김병일 |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 | |
| | 변경 | 217-34 | 장 | 공장 | 일반철골구조 | 김승후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 | 김승후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 | |
| 5 | 기정 | 217-31 | 장 | 한전주 | 전주번호:8662 534 7 R4 L4 | 성옥순 외 5인 |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 198-1 |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| 인천시 서구 심곡동 254-9 | |
| | 변경 | 217-31 | 장 | 한전주 | 전주번호:8662 534 7 R4 L4 | 인천광역시서구 |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 | 한국전력공사 서인천지사 | 인천시 서구 심곡로 53 | |
| 6 | 기정 | 217-34 | 장 | 채신주 | | 김병일 |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벌로 89, 101동 707호 | 한국통신(KT) 서인천지사 | 인천시 서구 탁옥로34번길 9 | |
| | 변경 | 217-34 | 장 | 채신주 | | 김승후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27번길 40 | 한국통신(KT) 서인천지사 | 인천시 서구 탁옥로34번길 9 | |
| 7 | 변경 없음 | 217-12 | 대 | 담장 | 콘크리트블록 | 김찬경 |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울림픽션수춘아파트 328동 1306호 | | | |
| 8 | 변경 없음 | 217-23 | 장 | 담장 | 콘크리트블록 | 오민우 |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124번길 202동 606호 | | | |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29호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,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2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- 부여·변경 도로명주소 : 인천 서구 파랑로 212 외 5건

| 종전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주소 부여(변경)사유 | 도 로 명 고 시 일 | 도 로 명 부 여 사 유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| | 별 도 열 략 | |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8. 2. 19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18-02-19

| 연번 | 지번주소 | 도로명주소 | 도로명고시일 | 도로명 부여사유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|
| 1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09-49 |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 212 (원창동) | 20090922 | 옛날 청라도가 파렘으로 불려, 이 명칭을 따 파랑로로 명명 | |
| 2 |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25 |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35-88 (왕길동) | 20081231 |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 |
| 3 |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174 |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5-13 (왕길동) | 20081231 |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 |
| 4 |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71 |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326번길 45-14 (왕길동) | 20081231 |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,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 |
| 5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93-3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196번안길 4-6 (원창동) | 20171025 | 원석로19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 |
| 6 |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-76 |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36 (원창동) | 20171025 |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,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| |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-30호
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의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(사업시행계획인가)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. 2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
 - 나. 면적 : 53,855.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가. 법인의 명칭 :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 - 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26
 - 다.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: 조합장 박보현(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)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8. 2. 13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
: 해당사항 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지면적(m ²) | 35,564 | 건축면적(m ²) | 5,835.43 |
| 건축연면적(m ²) | 166,089.51 | 건폐율(%) | 16.41 |
| 용적률(%) | 298.91 | 건축물의 높이(m) | 82.3 |
| 건축물 용도 | 공동주택(아파트) | 규모 | 지하3층/지상 26~29층 (공동주택 10개동 외) |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

| 공동주택 | 구분 | 세대수 (아파트) | 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 | | | | | |
|------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49.41m ² | 59.91m ² | 59.96m ² | 69.99m ² | 84.98m ² | 84.86m ² |
| | 계 | 1,218 | 273 | 200 | 252 | 215 | 164 | 114 |
| | 분양 | 1,178 | 233 | 200 | 252 | 215 | 164 | 114 |
| | 임대 | 40 | 40 | - | - | - | - | - |
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
| 정비기 반시설 |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| |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종류 | 규모 | 종류 | 규모 | 시행자 |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|
| | 도로 | 6.2m ² | 도로 | 7,276.8m ² | 가좌라이프 빌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| 조합/ 무상귀속 |
| | 도로 | 4,780.0m ² | 공용주차장 부지 | 423.0m ² | | |
| | 도로 | 1,448.0m ² | 공원 | 8,165.2m ² | | |
| | 공원 | 3,000.5m ² | 녹지 | 1,126.0m ² | | |

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-288호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8. 2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의 임기를 1년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및 타 구립 시설장 임기 형평성 유지
- 市 「2018년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력증원 확정」에 따른 정원변경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위원회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도모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」 적용

2. 주요내용
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임기 변경(안 제4조 3항)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정원 변경 (안 제7조 별표2)
- 인사위원회 권한 위임 (안 제8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」 기준에 따른 정비

3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서구청장 (참조: 노인장애인복지과, 전화: 032-560-4972, 팩스: 032-560-2741)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(붙임1)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개정이유
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의 임기를 1년에 한해 연임하도록 하여
원활한 업무수행 도모 및 타 구립 시설장 임기 형평성 유지
- 市 「2018년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력증원 확정」에 따른
조직체계 변경 (기존 8명→ 변경 9명)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위원회 조정으로 효율적 운영 도모
-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」에 따른
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, 복잡한
문장체계는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장 임기 변경(안 제4조 3항)
 -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.
-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정원 변경 (안 제7조 별표2)
 - 市 2018년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

따라 인력증원 (시 노인정책과-17855/17.12.18)

| 구분 | 계 | 센터장 | 일반직 | | | |
|----|---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부장 (1급) | 과장 (2급) | 대리 (3급) | 주임 (4급) |
| 현행 | 8 | 1 | 1 | 2 | 2 | 2 |
| 개정 | 9 | 1 | 1 | 2 | 2 | 3 (증1) |

○ 인사위원회 권한 위임 (안 제8조)

- ② 인사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르며, 제3조의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3. 참고사항

- 가. 개정 안 : “별지 참조”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지 참조”
- 다. 예산수반사항 : “해당 없음”
- 라. 관계 법령 발취 : “별지 참조”

(붙임2)

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”을 “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”를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6조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구청장이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한다”를 “하되, 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3항의 규정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치료를 요하는”을 “치료가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”을 “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근무상한 연령”을 “근무상한연령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[별표 1]”을 “별표 1”로,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한다.

제7조 본문 중 “[별표 2]”를 “별표 2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따른다”를 “따르며, 제3조의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구”를 “인천광역시 서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2조의 규정”을 “제12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타”를 “다른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[별표 3]”을 “별표 3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별표 2 중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별 정원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[단위 : 명]

| 구 분 | 계 | 센터장 (시설장) | 일 반 직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| | | 부장 (1급) | 과장 (2급) | 대리 (3급) | 주임 (4급) |
|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(직급 및 정원) | 9 | 1 | 1 | 2 | 2 | 3 |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붙임3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인천광역시 서구</u> <u>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</u> <u>운영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>제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 ② 운영위원회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<u>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</u>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.</p> <p>제4조(직원의 임면) ① (생략) ② 센터장은 <u>구청장이</u> 임면하며,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.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<u>한</u>다. ④ <u>제3항의</u>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인천광역시 서구</u> <u>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</u> <u>조례 시행규칙</u></p> <p>제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「<u>사회복지사업법</u>」 제36조 -----.</p> <p>제4조(직원의 임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하되,</u> <u>한 차례만 1년 연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제3항</u>-----</p> |

을 면직시킬 수 있다.

- 1.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·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- 2. (생략)
- 3.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5조(직원신분보장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③ 센터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65세로 하고, 그 밖의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.

제6조(자격요건) 센터 직원(센터장 포함)의 자격기준은 [별표 1]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조직체계 및 정원) 센터의

-----.

- 1. ----- 치료가 필요한 -----
- 2. (현행과 같음)
-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 제2항 -----

제5조(직원신분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1항-----

③ ----- 근무상한연령-----

제6조(자격요건) ----- 별표 1-----

----- 사람으로 -----.

제7조(조직체계 및 정원) -----

조직체계 및 정원은 [별표 2]와 같다. 다만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① (생략)

② 인사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.

제12조(회계관리) ① (생략)

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·감독을 받으며,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같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14조(보조금 관리) ① (생략)

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

----- 별표 2-----

---. -----
-----.

제8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 따르며, 제3조의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.

제12조(회계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인천광역시 서구-----
-----.

③ ----- 제12조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보조금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다른 -----

하여 관리하고 수입,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7조(공인) ① (생략)

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[별표 3]과 같다.

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」를 준용한다.

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공인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별표 3-----.

③ -----
- 그 밖의 -----

-----.

(붙임4)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제2항

제23조 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)

-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

□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(인천광역시)

- 기본원칙
 - 직제 및 정원규정은 본 지침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

□ 2018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

- 2018년도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인건비(직원 1명) 증원
 - 시 노인정책과-17855/17.12.18 (시30:구70)

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
(제정) 2007.05.09 규칙 제 674호
 (일부개정) 2007.06.19 규칙 제 675호 (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)
 (일부개정) 2007.07.19 규칙 제 679호
 (일부개정) 2011.03.11 규칙 제 763호
 (일부개정) 2012.02.15 규칙 제 781호
 (일부개정) 2012.08.10 규칙 제791호호
 (전부개정) 2015.05.11 규칙 제853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「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.

제3조(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 ② 운영위원회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직원의 임면) ① 직원(센터장 포함)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 ②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, 그 밖의 직원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 ③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.
 1.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·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2.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, 부당,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
 3.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제5조(직원신분보장) ①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③ 센터장의 근무상한 연령은 만 65세로 하고, 그 밖의 직원은 만 60세로 한다.

제6조(자격요건) 센터 직원(센터장 포함)의 자격기준은 [별표 1]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제7조(조직체계 및 정원) 센터의 조직체계 및 정원은 [별표 2]와 같다. 다만,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보수 등)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.

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」(이하 “운영지침”이라 한다)에 따른다.

제10조(복무) 센터 직원의 출장, 근무시간,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11조(재원)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보조금
2. 그 밖의 수익금 등

제12조(회계관리)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·감독을 받으며,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할 수 있다.

④ 센터 회계에 관하여는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및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제13조(물품의 관리)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, 보관,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전반 사항을 관리한다.

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 「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보조금 관리)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,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(자료요구 및 검사) 센터장은 구청장이 센터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하여 자료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, 검사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6조(결산)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,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공인)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·관리하여야 한다.

1.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
2.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

3.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작한 직인
-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[별표 3]과 같다.
-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8조(운영규정)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, 복무관리,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·시행하여야 하며,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부칙(2007.5.9 규칙 제674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7. 6.19 규칙 제675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(2007. 7.19 규칙 제679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1.3.11 규칙 제763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2.15 규칙 제781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2.8.10 규칙 제791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센터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칙(2015. 5.11 규칙 제853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청고 제2018-298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

인천도시계획시설[도로(소로2-14호선), 사업명 : 당하지구 소로2-14호선 도로개설공사]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,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열람·공고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560-577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 2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시행지 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8-8번지 일원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【종류】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4호선)사업
 - 【명칭】 당하지구 소로2-14호선 도로개설공사
3. 사업의 규모 : 도시계획시설(도로:소로2-14호선) L=121m, B=8m 중
미집행 시설 L=32m, B=8m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【성명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 - 【주소】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 244번지)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8. 5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| 연번 | 소재지 | 지번 | 지목 | 공부상 면적 (㎡) | 편입 면적 (㎡) | 소유자 | | 관계인 | |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| | | | | | 성명 또는 명칭 | 주소 | 성명 또는 명칭 | 주소 | 권리의 종류 및 내용 | |
| 1 | 인천 서구 당하동 | 1098-8 | 도 | 1,376.5 | 477 | 인천광역시 서구 | | | | | |
| 계 | | | | 1,376.5 | 477 | | | | | | |

7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8. 열람 장소 및 기간

- 장소: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
- 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